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의안 번호	312
----------	-----

제출년월일 : 2000. 7.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립 시기·절차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관리아생동·식물등의 지정·대상·방법·보호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 다.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관리기본계획, 행위제한, 출입제한, 중지명령, 일시생태계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표지,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 완충지역, 생태계의 보호·복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7조)
- 라. 자연환경조사의 시기·대상지역·기간·내용·방법·자료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마. 정밀조사등의 실시,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조사자료의 체계적관리, 생태계의 변화관찰, 자연환경조사원, 생태·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4조)

바. 자연휴식지의 관리,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공공시설의 녹화, 자연형 하천정비,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교육·홍보, 국제협력의 증진,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 내지 제32조)

사.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안 제33조)

3. 의안전문 : 별첨

4. 기타 참고자료

- 입법예고 결과 : 별첨
-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현재의 도민과 장래의 후손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 시·군 및 주민의 책무) ①도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군은 도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도 및 시·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도지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2.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④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아생동·식물 등의 보호

제4조(관리아생동·식물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중에서 충청북도관리아생동·식물(이하 “관리아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및 기타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아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증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관리아생동·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고시내용에 준하여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아생동·식물 등의 보호)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아생동·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아생동·식물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등 보전계획

4. 기타 관리아생동·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관리아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관리아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야생동물의 긴급구조) ①도지사는 농약등 독극물에 중독되었거나, 덫·올무·차량 등에 의해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민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보전

제7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생태계보전지역(이하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관리아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4.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5.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서 특별히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습지·초원지역

②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하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당해지역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특별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계변화관찰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완충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제9조(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 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동·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덧·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면의 매립·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하거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해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0조(출입제한) ①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학술 조사·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3.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생태계보전지역) ①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충청북도임시생태계보전지역(이하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에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허가 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호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15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 ①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완충지역) 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아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4장 자연환경의 조사 등

제18조(자연환경조사) ①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아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이를 행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아생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4.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시장·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

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충청북도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자연휴식지의 관리)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자연휴식지의 운영,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자연경관의 훼손 방지)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 호소주변, 하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공공시설의 녹화) ①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수목종류 및 녹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자연형 하천정비) ①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하 “소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을 정비할 때에는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조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조성, 도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아생동·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제30조(교육·홍보)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과태료 등

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 한 자
- ②법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입법예고 도민의견 수렴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00. 5. 19 ~ 6. 15

○ 충청북도 공고 제2000~116호

□ 예고결과 의견제출 : 3건

○ 충북환경운동연합 부설 사)충북환경연구소 2건

○ 충북농업기술원 이기열(병리곤충팀장) 1건

□ 제출의견 내용 및 조치방안

1. 조례안 제3조 제2항중 자문을 심의로 하고, 심의는 만장일치로 가결토록 변경(충북환경연구소) : 일부반영

< 제출의견 내용 >

(조례안)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① 생략

②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출의견)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① 생략

②-----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심의는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한다.

< 조치방안 >

○ 자문을 심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반영 조치하고, 심의시 만장일치 가결 요구건은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반영 불가

2. 조례안 제2조(도, 시·군 및 주민의 책무) 제3항에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등 명문화(충북환경연구소) : 미반영

< 제출의견 내용 >

(조례안)

제2조(도, 시·군 및 주민의 책무) ①-② 생략

③주민은 도 및 시·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출의견)

제2조(도, 시·군 및 주민의 책무) ①-② 생략

③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공고를 하고, 주민과 기타 관련자의 의견수렴을 거친다. 그리고 양호한 평가가 나왔을 때 비로소 사업제반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고 제차 관련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한다.

< 조치방안 >

- 사업자의 책무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 반영은 불가

3. 자연보호전문가에 곤충전문가 추천 건의(농업기술원 이기열) : 미반영

< 제출의견 내용 >

(조례안)

“ 해당사항 없음”

(제출의견)

- 무분별한 개발과 농자재 및 세제의 남용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사라져 가는 반딧불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중임
- 자연보호전문가의 현황에 자연환경보전에 관련한 곤충전문가가 누락되어 추천 건의

< 조치방안 >

-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건의사항으로 미반영

관계법령발췌

【 총 관 】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시·도관리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
제30조(시·도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보전),
제32조(자연환경조사),
제33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등),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
제35조(자연환경조사원),
제43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44조(자연경관의 보전),
제4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 제61조(과태료의 부과)
-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 제17조(자연환경의 보전)

【 법 령 별 】

● 地方自治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제15조(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 自然環境保全法

소관부처 : 환경부

全文改正 1997. 8. 28 法律第5392號

改正 1999. 2. 8 法律第5876號

1999. 2. 8 法律第5914號(公有水面管理法)

1999. 5. 24 法律第5982號(政府組織法)

第13條 (市·道管理野生動·植物의 지정·보호) 市·道知事は 管理區域 안에서 그 數가 감소하는등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에 準하여 보호할 必要가 있다고 判定되는 野生動·植物을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外에 依하여 市·道管理野生動·植物로 指定·보호할 수 있다.

第30條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의 지정·보전) ①市·道知事は 生態系保全地域에 準하여 보전할 必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의 規定에 依한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咨文을 거치고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道生態系保全地域으로 指定하여 管理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이 승인을 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市·道知事에게 當해 地域을 대표하는 生態系를 보전할 必要가 있는 地域을 市·道生態系保全地域으로 指定하여 管理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을 指定하는 때에는 그 緩衝地域을 指定하여 管理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의 規定은 緩衝地域의 指定절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市·道知事は 第 1項의 規定에 依하여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을 指定한 때에는 當해 地域의 位置·面積·指定年月日 기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⑤市·道知事は 第18條第2項 및 第35項, 第19條 내지 第23條 및 第25條 내지 第27條의 規定에 準하여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外에 依하여 市·道生態系保全地域의 보전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32條 (自然環境調査) ①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조하여 10年마다 全國의 自然環境을 調査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조하여 生態·自然圖에서 1等級 圈域으로 분류된 地域과 自然狀態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必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 5年마다 自然環境을 調査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市·道知事は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外에 依하여 管轄區域의 自然環境을

調査할 수 있다.

第33條 (精密調査와 生態系의 變化觀察등) ①環境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生態系로서 특별히 調査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生態系에 대한 精密調査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실시한 地域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生態系의 變化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는補充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③環境部長官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生態系의 變化내용을 지속적으로 觀察하여야 한다.

④第 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觀察에 필요한 사항은 環境부승으로 정한다.

⑤市·道知事は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區域에 대한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觀察을 실시할 수 있다.

第34條 (生態·自然圖의 작성) ①環境部長官은 각종 開發計劃의 수립이나 施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第32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全國의 自然環境을 다음 各號에 따라 구분한 生態·自然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等級 區域 : 다음 各目에 해당하는 地域

가. 滅種危機野生動物·植物 또는 保護野生動物·植物의 주민 棲息地·渡來地 및 주요 移動通路가 되는 地域

나. 生態系가 특히 우수하거나 景觀이 특히 수려한 地域

다. 生物의 地理的 分布限界에 위치하는 生態系 地域 또는 主要植生の 類型을 代表하는 地域

라. 生物多樣性이 특히 풍부한 地域

마. 기타 各目 내지 各目에 준하는 生態的 가치가 있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地域

2. 2等級 區域 : 第1號 各目에 준하는 地域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地域 또는 1等級 區域의 外部地域

3. 3等級 區域 : 1等級 區域, 2等級 區域 및 別途管理地域으로 분류된 地域外的 地域으로서 開發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地域

4. 別途管理地域 :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보전되는 地域중 歷史的·文化的 景觀의 가치가 있는 地域이거나 都市의 綠地採集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②環境部長官은 生態 自然圖를 작성함에 있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 또는 專門人力의 協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軍事目的上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料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生態·自然圖는 5萬分の 1이상의 地圖에 實線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生態·自然圖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市·道知事は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효율적인 自然環境保全을 위하여 管轄區域의 상세한 生態 自然圖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環境部長官은 生態·自然圖를 작성하는 때에는 國民의 열람을 거쳐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작성된 生態·自然圖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報하고 告示하여야 한다.

第35條 (自然環境調査員)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32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自然環境調査員(이하 "調査員"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第 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員의 자격·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43條 (自然休息地의 지정·관리)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른 法律에 의하여 公園·觀光園地·自然休養林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地域중에서 生態的·景觀的 가치등이 높고 自然探訪·生態教育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場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然休息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私有地에 대하여는 土地所有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 1項의 規定엔 의하여 지정된 自然休息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自然休息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利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自然休息地로 지정된 후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觀光園地·自然休養林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然休息地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44條 (自然景觀의 보전) 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景觀의 가치가 높은 海岸線등 주요 景觀要素가 훼손되거나 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實情에 적합하도록 自然景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45條 (公共用으로 이용되는 自然의 훼손방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生態的·景觀的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立木의 伐採 또는 土地의 形質變更을 제한할 수 있다.

1. 海水浴場등 公共用으로 이용되고 있는 場所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公共用으로 이용되는 場所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道路 또는 鐵道邊에 있는 숲·巨木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景觀的 價値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기타 第1號 또는 第2號에 준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제57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1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 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

제17조(자연환경의 보전) ①도와 도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도는 공원·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